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7-877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2.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19.(금)	25.12.29.(월)	25.12.30.(화)	25.12.31.(수)	26.01.07.(수)	26.01.10.(토)~ 26.01.16.(금)	26.01.19.(월)~ 26.01.2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co.kr/s/seona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12.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12.29.(월)	25.12.30.(화)	25.12.31.(수)	26.01.07.(수)	26.01.10.(토)~ 26.01.16.(금)	26.01.19.(월)~ 26.01.2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6.01.0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35939호(2025.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9-2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3층 1개동 총 193세대
[특별공급 112세대(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06	01	084.2012A	84A	84.2012	30.2466	114.4478	55.6116	170.0594	14.7484	115	11	18	26	3	10	68	47	3
	02	084.2325B	84B	84.2325	31.8200	116.0525	55.6323	171.6848	14.7538	76	8	10	17	2	7	44	32	2
	03	168.3158	168	168.3158	62.8338	231.1496	111.1661	342.3157	29.4815	2	-	-	-	-	-	-	2	-
	합 계									193	19	28	43	5	17	112	81	5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2012A	084.2325B	168.3158
약식표기	84A	84B	168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 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시설별(아파트, 상가)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니,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m²) ÷ 3.3058)
-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울산광역시	2	2	4
		부산광역시	1	1	2
		경상남도	1	1	2
	국가유공자		2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3
	중소기업근로자		1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26	17	4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7	17
합 계			68	44	112

■ 공급금액표

(단위: 세대,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6.04.24	26.07.24	26.10.23	27.02.25	27.06.25	27.10.25	입주지정일
084.2012A	84A	201동 1호	4층	1	330,529,350	547,370,650	-	877,900,000	5,000,000	38,895,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307,265,000
			5층	1	334,030,800	553,169,200	-	887,200,000	5,000,000	39,36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310,520,000
			6층	1	337,494,600	558,905,400	-	896,400,000	5,000,000	39,82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313,740,000
			7~10층	4	344,459,850	570,440,150	-	914,900,000	5,000,000	40,745,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320,215,000
			11~20층	9	346,907,100	574,492,900	-	921,400,000	5,000,000	41,07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322,490,000
			21~30층	10	347,245,950	575,054,050	-	922,300,000	5,000,000	41,115,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322,805,000
			31층 이상	13	347,961,300	576,238,700	-	924,200,000	5,000,000	41,21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323,470,000
		201동 3호, 4호	4층	2	331,244,700	548,555,300	-	879,800,000	5,000,000	38,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307,930,000
			5층	2	334,708,500	554,291,500	-	889,000,000	5,000,000	39,45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311,150,000
			6층	2	338,209,950	560,090,050	-	898,300,000	5,000,000	39,915,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314,405,000
			7~10층	8	345,175,200	571,624,800	-	916,800,000	5,000,000	40,84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320,880,000
			11~20층	18	347,622,450	575,677,550	-	923,300,000	5,000,000	41,165,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323,155,000
			21~30층	20	347,961,300	576,238,700	-	924,200,000	5,000,000	41,21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323,470,000

			31층 이상	24	348,676,650	577,423,350	-	926,100,000	5,000,000	41,305,000	92,610,000	92,610,000	92,610,000	92,610,000	92,610,000	92,610,000	324,135,000
084.2325B	84B	201동 2호, 5호	4층	2	333,917,850	552,982,150	-	886,900,000	5,000,000	39,345,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310,415,000
			5층	2	337,456,950	558,843,050	-	896,300,000	5,000,000	39,815,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313,705,000
			6층	2	340,996,050	564,703,950	-	905,700,000	5,000,000	40,285,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316,995,000
			7~10층	8	348,074,250	576,425,750	-	924,500,000	5,000,000	41,225,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323,575,000
			11~20층	18	350,559,150	580,540,850	-	931,100,000	5,000,000	41,555,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325,885,000
			21~30층	20	350,898,000	581,102,000	-	932,000,000	5,000,000	41,6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326,200,000
			31층 이상	24	351,613,350	582,286,650	-	933,900,000	5,000,000	41,695,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326,865,000
168.3158	168	201동 2호, 3호	43층	2	852,101,640	1,411,113,015	141,135,345	2,404,350,000	5,000,000	115,217,5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841,522,5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 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통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범위를 정하며,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앞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head><tr><th>구 분</th><th>울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견본주택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9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body>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r><th>순위</th><th>내용</th></tr><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12.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 10,087,437원	8,578,089원 ~ 12,009,323원	9,031,049원 ~ 12,643,467원	9,733,087원 ~ 13,626,320원	10,435,125원 ~ 14,609,174원	11,137,163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 11,528,499원	10,293,707원 ~ 13,724,941원	10,837,259원 ~ 14,449,677원	11,679,704원 ~ 15,572,938원	12,522,150원 ~ 16,696,198원	13,364,595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12.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울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2">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2">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일 정	25.12.29.(월)	25.12.30.(화)	25.12.31.(수)	26.01.07.(수)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07.(수)~2026.01.1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예정)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 예정	2026.01.10(토)~2026.01.16(금) 7일간 10:00 ~ 17:00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

※ 상기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은 예정사항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확정된 서류제출 기간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공급계약’ 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군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본인·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만19세이상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대리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안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구분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신규 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공고일 이전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서 ■ 건본주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서류 제출]	■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해당직장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구분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 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이택스 (etax.seoul.go.kr) ■ 위택스 (www.wetax.co.kr)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 열람 → 조회결과 인쇄·제출 - “신청하신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예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건본주택 비치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경우 - 추첨제 당첨된자 중 우선공급(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으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광역시 적용)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신청 가점 확인(건본주택에 비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서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대리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 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체결 기간	장 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1.19.(월) ~ 2026.01.21.(수) (10:00~16:00)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201-910031-41204	교보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201동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 납부 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31-41204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일자에 해당계좌로 납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	인지세	본인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자)		
대리인 계약 시	※ 대리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해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해제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키폭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폭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상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옵션계약서를 작성 후 각각 인지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_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금융기관 등의 관련법규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의 관련법규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 최초일 전일까지 매월 발생한 이자를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관계(공급금액, 연체료 등)를 모두 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계약자를 대신해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함께 계약자를 대신해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납부 완료, 입주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10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6.04.24	입주지정일
84A	27,500,000	2,750,000	2,750,000	22,000,000
84B	27,500,000	2,750,000	2,750,000	22,000,000

168	55,000,000	5,500,000	5,500,000	44,000,000
-----	------------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201-931461-45537	교보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201동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31-46404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201동 1403호 홍길동: 2011403홍길동 / 202동 201호 홍길순: 2020201홍길순)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비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노출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도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

- 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는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발코니),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거실과 침실1의 투시형난간은 창호일체형 유리난간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안내 (발코니 확장 시 옵션선택 가능,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 선택 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기본형)	부분(3개소, 거실, 주방, 침실1)	84A, 84B	5,390,000	539,000	539,000	4,312,000	
		전실(일반타입 5개소,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4A, 84B	9,130,000	913,000	913,000	7,304,000	
	시스템 에어컨 (고급형)	부분(3개소, 거실, 주방, 침실1)	84A, 84B	6,290,000	629,000	629,000	5,032,000	
		전실(일반타입 5개소,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4A, 84B	10,630,000	1,063,000	1,063,000	8,504,000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천장 구조 및 높이, 환기 설비 위치, 소방시설물 위치, 등기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실내기 위치는 건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냉매매립배관 2개소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이 기본 제공되며 평형별 시설물(냉매배관, 배수배관, 콘센트 등)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천장형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배수배관, 콘센트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옵션 선택한 실내기의 설치 개소 및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2개소(콘센트 포함)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기본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삼성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제조사, 모델,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 일부 타입 실외기실은 발코니와 별도 분리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도어와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	84A, 84B	5,540,000	554,000	554,000	4,432,000	키큰장 포함
	LG전자 오브제 냉장/냉동/김치냉장고	84A, 84B	5,660,000	566,000	566,000	4,528,000	키큰장 포함
기능성오븐	삼성	84A, 84B	320,000	32,000	32,000	256,000	
식기세척기	삼성	84A, 84B	850,000	85,000	85,000	680,000	
3구 인덕션	쿠첸	84A, 84B	400,000	40,000	40,000	320,000	

■ 추가 선택 품목 - 평면 선택 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키친라운지1	84A/D (아일랜드장 형태변경 + 우물천장 + 간접조명 + 주방장식장) 84B/C (아일랜드장 형태변경)	84A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택 1
		84B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키친라운지2	84A/B/C/D ('키친라운지 1'+업앤다운 테이블)	84A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84B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멀티라운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택 1
룸인룸1	복도장 + 슬라이딩도어	84A, 84B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룸인룸2	복도장 + 슬라이딩도어 + 침실3 불박이장(업그레이드)	84A, 84B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 추가 선택 품목 - 마감 선택 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현관컬렉션	신발장 유리도어 + 제균기 + 현관창고 엠보PET 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84A, 84B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현관컬렉션 (수동중문 선택시)	신발장 유리도어 + 제균기 + 현관창고 엠보PET 폴딩도어 + 벽부형 시스템가구	84A,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수동중문 선택 시 선택 가능
거실컬렉션	세라믹 타일(거실 2면, 복도 1면) + 가구/시트 패널(복도 1면) + 픽처레일(거실 2면, 복도 1면)	84A 기본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84A 키친라운지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84A 멀티라운지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84A 룸인룸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84B 기본	10,800,000	1,080,000	1,080,000	8,640,000	
		84B 키친라운지	10,800,000	1,080,000	1,080,000	8,640,000	
		84B 멀티라운지	10,400,000	1,040,000	1,040,000	8,320,000	
	84B 룸인룸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욕실 컬렉션	포세린타일(벽/바닥)+고급 수전/도기+착색 샤워부스(부부욕실)	84A, 84B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바닥 컬렉션	(거실,복도,주방) 타일마루 + (침실) 광폭 강마루	84A, 84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주방 컬렉션(기본평면)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 상부장 + 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84A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B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주방 컬렉션 (키친라운지 1)	(84A/D)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 상부장 + 주방 장식장 고급화 + 주방수전 + 컬러 렌지후드 (84B/C) 벽체/상판 세라믹 타일 + 유리상부장 + 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84A 키친라운지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키친라운지 1 선택 시 선택가능
		84B 키친라운지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주방 컬렉션 (키친라운지 2)	(84A/D) 벽체/상판 세라믹타일 + 유리 상부장 + 주방 장식장 고급화 + 주방수전 + 컬러 렌지후드 (84B/C) 벽체/상판 세라믹 타일 + 유리상부장 + 주방수전 + 컬러렌지후드	84A 키친라운지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키친라운지 2 선택 시 선택가능
		84B 키친라운지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 추가 선택 품목 - 가구 선택 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안방 불박이장	불박이장 + 화장대엠보PET마감 + 드레스룸 유리도어	84A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드레스룸 컬렉션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84A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벽판넬형 시스템 가구 +슬라이딩 도어	84B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자녀방 컬렉션	불박이장(유리도어) + 화장대 + 전신거울	84A, 84B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룸인룸 선택 시 선택 불가

보조 주방가구	가구, 상판, 콘센트 추가(전기)	84A, 84B	500,000	50,000	50,000	400,000	
■ 추가 선택 품목 - 기타 유상 옵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납부	2026.05.25	입주지정일	
현관중문(수동)	3연동 수동 중문 + 천장/벽체 시트판넬	84A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B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전열교환환기장치, 천장형 공기청정기, 통합센서 인체형유티	84A, 84B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천장형 에어샤워,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84A, 84B	1,080,000	108,000	108,000	864,000	
조명 컬렉션1	거실 리니어 조명 + 안방 특화 조명 + 13인치 월패드	84A	4,770,000	477,000	477,000	3,816,000	
		84B	6,010,000	601,000	601,000	4,808,000	
조명 컬렉션2	블루투스 스피커 식탁 조명 (※스피커 내장형 은 1개제공) + 주방 싱크대 매입조명	84A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84B	1,710,000	171,000	171,000	1,368,000	
안면인식 도어폰	안면인식 도어폰	84A, 84B	350,000	35,000	35,000	280,000	
무선 비상벨	무선 비상벨 시스템	84A, 84B	300,000	30,000	30,000	24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201-931239-94137	현대건설(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201동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옵션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42-98504 예금주: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201동 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 문제로 계약체결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11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기본 유의 사항	공통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지역, 타사 또는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시설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 수준 성능 또는 동급 수준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시공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원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대지비율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비율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지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 사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m²) x 0.3025)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현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단지는 별도의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향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사무소는 각 단지별 구분 관리 되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 실별 배치 및 평면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계약 일반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 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 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가 아닌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입주 절차	•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단지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공급계약 서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설계 일반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이 소유한 대지이나 공공에 이용토록 하는 단지외부를 둘러싼 공개공지, 도로 등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기본 경관계획에 따라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201동 단위세대(1~5호)의 배치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시설 (부대시설, 커뮤니티 등)의 층수 표기 방법은 편의를 위해 인허가 도서와 일부 상이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협의사항에 따라 1, 2단지의 층수 표기 방식은 단지별로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석재 등)의 경우, 생산 방식 및 시점에 따라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원목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배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변현황/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에어매트 설치 공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진동, 수증기, 매연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26년말 준공 예정인 동측(e편한세상변영로리더스포레) 등의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동일 블록 내에 829-2번지(신창조 아파트), 829-16번지(빌라), 829-27(상가주택)이 존치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지 북측에 인접한 예정 도로 및 계단, 승강기 등 각종시설물은 본단지 건너편의 사업시행자 지정후 공동으로 개발되는 시설로써, 단지 북측 대지의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 당현장의 준공시까지 미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권자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수 있다 • 단지 외부단차로 인해 실시공되는 외부 바닥면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등)은 추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호자 선택에 따라 「유보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지원 및 입학이 이루어지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야음초등학교, 옥동야음중학교교, 남부학교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 단지 내 모든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상층 조경식재, 시설물 등은 소방차부서 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헬륨/우수조/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각 동 옥상 및 피난안전층에는 소화수조설비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등의 발생 가능성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인허가 계획상 미설치 될수 있으며,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가 주차장은 지상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2층~지하3층,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6층으로 설계되어, 지하3층 주차공간을 혼용되어 사용해야하며, 소유자협의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차관리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상층에서 지하2층 사이의 차량이동구간 램프에는 외부차량 출입관리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고, 위치나 형태는 추후 결정되며, 램프 중앙부에 연석이 설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6층 254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 7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지상층, 201동 하부(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하며, 수거차량이 지상층에 진출입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장여건으로 인해 일부 주차면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삭제 될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상 지하3층에서 주차가 혼재 될수 있으며, 서비스 차량의 하역은 지하2층을 공동 사용하니, 이점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스카이라운지 포함)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한 출입동선의 혼재, 이용불편, 소음, 진동 및 대지지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계약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라운지는 오피스텔 공용공간을 통하여 출입하며, 특히 별도의 전용 동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오피스텔 승강기 공동사용) 으로 인한 출입동선의 혼재, 이용불편, 소음, 진동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계약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바닥에 무근콘크리트 및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상부 및 옥탑 코어 벽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에폭시코팅 및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트렌치커버 는 측면만 시공)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한널 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유효높이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 2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하역전용) - 출입구 높이 2.7m
 - 지하 3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지하 4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지하 5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지하 6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0mm 내외로 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환기 및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공용부 PD에 설치 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나 진동, 악취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이 개폐 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상도코팅은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단지는 건물 지상 2층에 기계실(저수조)/펌프실/전기실/비상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및 제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중계장치 설치 위치 (예정)
 - 지하3층: PIT(202동)
 - 지상11층: 201동, 202동
 - 지상33층: 201동
 2.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예정)
 - 각 동 세대 천정내부 및 엘리베이터홀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전위치 외측면 벽체는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덕트,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풀(옥상 구조물 및 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RC 또는 건식공법(모듈러 PC, 철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문에 적용되는 로비폰 중 일부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개인에 의해 안면 인식 부위의 높이 및 위치 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양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된다. - 원패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 피난안전구역(17층)에 설치되는 창호는 크기, 형태, 위치, 수량이 시공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는 오피스텔동 최상층에 위치하며, 오피스텔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각 부대시설동의 지붕 배수를 위한 선홈통이 외부에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201동과 202동은 E.J.(Expansion Joint)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커버를 통해 마감되어 도장면과 이색이 질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사용은 소유자협의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라 개별 단지별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를 둘러싼 도로 등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위 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발코니),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수량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본 시공 시,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환기구의 위치, 크기, 디자인, 수량 등이 결정된다. - 본 공사시 타일,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 도기 및 악세서리, 욕실FAN 등 마감재의 위치는 본 공사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공간특화 미선택시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는 냉장과 크기에 따라 냉장과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건본주택을 참고 바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은 소방성능위주 설계 대상 현장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형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세대 분전반 내에 아크 차단기가 설치되어 사이즈가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에 대하여 추후 입주자 개인에 의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니, 건본주택 내 예시(※샘플 커버)를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세대 통합 분전반의 경우, 제품 개발 상황에 따라 현재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샘플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각 세대 내부 침실 부위 등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통합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건축물 품질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부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phi 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 펜트리, 가구 내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각종 설비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선 품목으로 미전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옵션 계약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 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창이 없는 세탁실(ex. 84OA 타입) 은 천정에 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천정고가 다른 타입에 비해 낮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방 옵션세대의 책상부위 빌트인 콘센트는 통신선 인출이 1회선으로 제한되어, 해당 위치의 LAN 포트 2구 중 1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미제공되는 1구는 포트 마개로 처리되며, 부족분 1구는 반대편 벽체의 콘센트에 LAN 1구로 기본 제공 됩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상부장, 하부장 후면, 장식장, 냉장고장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힐스 및 보이스홈(유상옵선)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힐스 및 보이스홈(유상옵선)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힐스 서비스 및 보이스홈(유상옵선)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는 등기구 및 단열재, 각종 설비배관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별도로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선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천정 내부, 침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cdC, cdC27 모델) 설치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 가스 쿡탑 사용 시,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 소화기 제거기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인덕션 선택 시, 가스배관은 렌지후드 인근 천장까지만 연결되며, 천장 타공 후 캡마감됩니다. 입주 후 가스 쿡탑 이용 시, 추가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무선 비상벨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구획용 철문이 설치된 공간(예: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서는 신호 전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튼의 작동 감도 및 디자인, 색상 등은 제품 특성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비상벨 버튼의 설치는 입주자 자유 부착으로 별도의 고정 금구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명 컬렉션1번 품목은 안방특화조명+ 거실 리니어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입및 평면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컬렉션2번 품목은 블루투스 스피커 식탁 조명+ 싱크대 특화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 및 평면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 식탁 조명은 1개가 구성품이며 그 외 부위는 스피커 기능이 없는 동일 디자인이 적용 됩니다.
- 조명 컬렉션1번 선택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상부장에 거실리니어 조명의 SMPS함이 설치되며 해당공간의 수납이 불가합니다.
- 안방 특화조명,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직하 조명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일부 구간에는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 될수 있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상 하향식 피난구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일부 세대는 인허가(소방) 조건인 소방대 진입창으로 침실 외창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외부 조망간섭 및 창호성능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세대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과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형태,재질,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류의 사양(개폐 방식 및 손잡이 디테일, 휠라 사이즈 및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일반가구 마감 색상, 디테일, 하드웨어,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H업앤다운테이블 사용 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괴임/굽힘/부상 등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코너부위 타일마감면은 본공사 시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등은 본공사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추가분절되어 시공될수 있으니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마루(유상옵션)와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본공사시 별도의 재료 분리대 또는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마루(옵션 포함)의 제품 특성상 '용이' 패턴이 있을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유상옵선품목인 슬라이딩도어와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천장,가구 등에 따라 본 공사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기기 사전확인후 가지고 계산 가전기기 사이즈가 맞들어갈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장비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광플라즈마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중문 개방 후 사용시, 세대 안으로 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옵션선택에 따라서 조명의 형태,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옵션선택 시, 장비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디자인, 위치는 견본주택 대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웍)의 냉방제어기능은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선품목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상이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양변기 및 세면기 하부)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정의 각종 시설물(배관, 덕트 등)들로 인한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폭, 높이 등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 전기, 가스 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설치 위치, 옵션 선택 유/무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버튼 사양(디밍/색온도 조절 버튼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벽부형 등기구의 경우 전열교환기 및 각종 설비 배관 등의 간섭(음영 하자)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세탁실, 생활지원센터 등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2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2.7m	2.7m
지하 3층	2.3m	2.3m
지하 4층	2.3m	2.3m
지하 5층	2.3m	2.3m
지하 6층	2.3m	2.3m

• 지하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2호 및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임.
-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 I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illegible]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호	(주)진화건축건축사사무소	(주)지케이엔지니어링		
금액	961,642,000	1,743,5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7800호	₩ 117,809,64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창연건설,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수인(을)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 ①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창연건설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창연건설임을 매수인(을)은 인지한다.
- ②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매수인(을)과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③ (주)창연건설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인(을)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매수인(을)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창연건설(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을)은 이에 동의한다.
- ⑤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공급금액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⑥ 매수인(을)은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창연건설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으며, 시공자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자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매수인(을)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창연건설이 부담한다.
- ⑧ 매수인(을)이 납부한 공급금액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⑨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창연건설 또는 매수인(을)은 분양계약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주체 및 사업 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교보자산신탁(주)	(주)창연건설	현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230111-0352359	110111-0007909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79, 4층 (야음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안내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건본주택 위치

현장 위치

- 건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번지
- 운영기간 : 2025.12.24(수) ~ 계약 마감일
- 운영시간 : 10:00 ~ 17:00
- 현 장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9-20 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co.kr/s/seonam>
- 대표번호 : 052-257-8777 (10:00~18:00)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건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바라며,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